

「평창군 산양삼 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4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4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4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산림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전환(안 제6조 ~ 제7조)
-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4. 16.)

「평창군 산양삼 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산양삼 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제안일자 : 2024. 4. 4.
- 회부일자 : 2024. 4. 16.
- 상정일자 : 2024. 4. 16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전환(안 제6조 ~ 제7조)
-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제1항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8조에서 특화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·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정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.

[표 1] 위원회 정비 방안

< 기본 방향 >

정비 대상		정비 방안
법령상 임의위원회 / 조례상 위원회	신설 위원회	신설 최대한 억제
	미개최 위원회	· 3년간 미개최 ⇒ 폐지
		· 1년간 미개최 ⇒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
	비효율 위원회 <small>* 연 3회 미만 개최, 구성·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</small>	· 기능 유사·중복 ⇒ 통·폐합
· 기능 독립 ⇒ (목적달성) 폐지 (한시필요) 존속기한 설정 (내부안건) 협의체 전환 (존속필요·안건少) 비상설화		
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(행안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	· 미개최 · 비효율	⇒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(행자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

나. 입법의 취지

-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 조문 내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명료하게 정비함.
-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하도록 하였으며, 이는 위원회 정비 지침의 개정 예시안을 따른 것으로 사료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산양삼특구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,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**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 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8조(조례의 제정)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·개정·폐지할 수 있다.

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·개정·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.

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4조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
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·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붙임 2]

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4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120대 국정과제 13. 「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위원회 정비」
-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비효율적 운영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정비
-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

(안 제6조5항 및 안 제7조제1항)

나.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참조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 02. 07. ~ 2024. 02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[기획실-2219 (2024.02.05.)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없음[기획실-2219 (2024.02.05.)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할 사항 없음[가족복지과-8297 (2024.03.06.)]
- 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실-4121(2024.03.12.)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4720(2024.03.22.)]

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2조 제1항”을
“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8조제1
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제4조에서”를
“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”로,
“제9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광고물의 특례)”를 “(광고물 등의 특례)”로 하고, 같은
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
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지역에서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, 그 홍보내용을
담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상설화로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	이 조례는 「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	-----	「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8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	이 조례에서 “산양삼 특구”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제4조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	-----	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----- ---- 제11조----- -----.
제4조(광고물의 특례)	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특구지역에서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특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	제4조(광고물 등의 특례)	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지역에서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,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.	

②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~ ④
(생략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7조(위원회의 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상설화로 안전이 발생하면 개최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취

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제11조(특화특구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(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조례의 제정)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·개정·폐지할 수 있다.

제34조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
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4조(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)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·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공중보건,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: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산림과장 이 성 모
연락처	(033) 330 - 2450